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관리항만 항만배후단지 개발·관리 권한 시·도지사로 이양〉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56)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지방관리항만 항만배후단지 개발·관리 권한 시·도지사로 이양..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3.

3. 회 부 일 : 2024. 1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리무역·연안항과 지방관리무역·연안항으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국가관리무역·연안항의 관리 및 개발 관리청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지방관리무역·연안항의 관리 및 개발 관리청은 시·도지사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항만을 국가관리무역·연안항과 지방관리무역·연안항으로 구분하고 그 개발 및 관리 권한도 각각 국가와 시·도지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요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2021년 1월 시행) 제정 사항을 반영한 것임.

그러나 여전히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관리와 같은 행정은 지방일괄이양법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지방관리항만 항만배후단지에 관한 개발 및 관리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 및 지방의 인구·지리·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50조, 제51조 등).

Ⅲ. 검토의견

1. 지방관리항만 항만배후단지 개발·관리 권한 시·도지사로 이양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만의 항만배후단지개발·관리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려는 것임 (안 제50조 등).

현행	개정안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u>해양수산부장관</u> 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u>해양수산부장관</u> 은 무역항에서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가 인접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u>해양수산부장관</u> 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4. (생략) ④ <u>해양수산부장관</u> 은 제1항 및 제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u>관리청</u> ----- ----- ----- -----. 1. ~ 6. (현행과 같음) ② <u>관리청</u> ----- ----- ----- ----- -----. ③ <u>관리청</u> ----- ----- ----- -----. 1. ~ 4. (현행과 같음) ④ <u>관리청</u> -----

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지정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⑥ · ⑦ (생략)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

-----관리
청-----.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관

리청 _____

④ 관리청-----

⑤ 관리청-----

⑥·⑦ (현행과 같음)

제52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항만 배후단지에 필요한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의 일부(해당 항만배후단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원형지 공급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는 원형지 개발과 관련하여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이행조건을 제5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원형지개발자(국가기관 및 지

제52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관리청

제54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

-----관리청-----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관리청 _____.

④ 관리청-----

⑤ (현행과 같음)

⑥ _____

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형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 3. (생략)

⑧ · ⑨ (생략)

제5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생략)
<이하 생략>

관리청

⑦ 관리청

1. ~ 3. (현행과 같음)

⑧・⑨ (현행과 같음)

제5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이하 생략>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3조¹⁾에서는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리무역·연안항과 지방관리 무역·연안항으로 구분하고 있음.

[항만현황]

구분		항만명
국가관리 항만 (26개)	국가관리무역항 (14개)	경인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묵호항
	국가관리연안항 (12개)	용기포항, 연평도항, 격렬비열도항, 상왕등도항, 흑산도항, 가거항리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항, 추자항, 화순항
지방관리 항만 (36개)	지방관리무역항 (17개)	서울항, 태안항, 보령항, 완도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진해항, 호산항, 삼척항, 옥계항, 속초항, 제주항, 서귀포항
	지방관리연안항 (19개)	대천항, 마량진항, 송공항, 홍도항, 진도항, 땅끝항, 화홍포항, 강진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진촌항, 중화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강구항, 주문진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1) 「항만법」

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위치·구역 등) ① 항만은 다음 각 호의 항(港)으로 구분하되,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무역항 2. 연안항

② 무역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국가관리무역항: 국내외 육상·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2. 지방관리무역항: 지역별 육상·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③ 연안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국가관리연안항: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2. 지방관리연안항: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 또한, 현행법 제2조에서는 국가관리무역·연안항의 관리 및 개발 관리청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지방관리무역·연안항의 관리 및 개발 관리청은 시·도지사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음.²⁾
- 이는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 및 지방의 인구·지리·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요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2021년 1월 시행)³⁾의 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현행법상 항만을 국가관리무역·연안항과 지방관리무역·연안항으로 구분하고 그 개발 및 관리 권한도 각각 국가와 시·도지사로 구분하여 규정한 것임.
- 참고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현행법은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승인권자, 항만개발사업의 준공 주체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지방관리무역항·연안항 관리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관리청(해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으로 개정(2021.1.1. 시행)한 바 있음.

2)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관리청"이란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정관청을 말한다.

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해양수산부장관
나.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3)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항만법」 등 4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 한 법률로서 2021년 1월 1일 시행되었음.

[「지방일괄이양법」제정안에 따른 항만 관리청 변경 내역]

구 분		이 전 ('21.1. 법 시행전)	현 행 ('21.1. 법 시행후)
무역항	국가관리무역항 (14개소)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관리무역항 (17개소)		시·도지사
연안항	국가관리연안항 (12개소)		해양수산부장관
	지방관리연안항 (19개소)		시·도지사

□ 개정안은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항만 중 지방관리무역·연안항에 대한 개발 및 관리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양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고, 아울러 항만배후단지⁴⁾가 항만시설 중의 하나임을 감안해 볼 때,

지방관리항만 항만배후단지에 관한 개발 및 관리 권한도 시·도지사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이며, 해양수산부도 동의한다는 입장임.

4)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가. 기본시설

1) 항로, 정박지, 소형선 정박지, 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등

나. 기능시설

1) 선박의 입항·출항을 위한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등

다. 지원시설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등

라.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마. 항만배후단지

문 의 처
02)6788-5419